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72호
- 나. 발 의 자 : 임종국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제9조의2).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부칙상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일자리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 근거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자리기본계획의 수립, 일자리 관련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일자리 정책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제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sup>1)</sup>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없는 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년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음.

- 위원회는 그 동안 경제·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고용·노동·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존속기한 만료일인 2017년 8월 1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없이 위원회가 운영되었음.

**<일자리위원회 추진 경과>**

- 2015.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시장공약)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추진('15.6월)
- 2015. 8월 제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0명, 2015.8.12.~2017.8.11.
- 2017. 8월 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1명, 2017.8.12.~2019.8.11.

-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위원의 자격, 회의 및 심사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음.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그간 일자리위원회는 총 24회 개최되었으며(정기회의 10회, 실무회의 14회), 존속기한 만료 후에는 총 5회가 개최되었음.

**<존속기한 만료 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비고
2018.3.29	- 2차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보고 - 2018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 분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4.27	- 2018년 강소기업 지원 계획보고 - 2차회의논의 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018.5.17	- 2018 청년일자리 관련사업 추진 현황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제안, 향후 논의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018.6.8	-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보고 - 향후 분과회의과제 논의	실무위원회
2018.11.7	- 2019년 일자리 주요사업 - 2018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추진현황 - 서울지역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	

-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을 피할 수 있으나, 단순 행정 실수로 법적 하자를 야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문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위원회의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나 안이한 행정으로 이를 간과하였음.
-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본문에 명시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판단됨.
- 서울시는 차후에 행정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원회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의 명백한 사유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붙임자료 1>

<일자리위원회 개최현황>

연번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비고
1	2015.08.12	-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대장정 보고 - 거버넌스 운영 방안 논의	
2	2015.08.28.	- 서울시 일자리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일자리실무위원회 3개 분과 구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실무위원회
3	2015.10.15.	- 노동조건개선 토론	실무위원회
4	2015.10.15.	- 서울희망일자리 포럼(청년)	실무위원회
5	2015.11.15	- 서울희망일자리 포럼(여성·중고령)	실무위원회
6	2015.11.27.	- 서울희망일자리 포럼(소상공인, 산업단지 등)	실무위원회
7	2015.12.23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서울일자리대장정 성과보고 - 2016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방향 보고 - 일자리실무위원회 아젠다 보고 및 심의 - 2016년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8	2016.02.03.	- 16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추진방향 논의 - 일자리포럼 월별주제 논의 및선정	
9	2016.02.17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동의를 건 - '16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 일자리·고용포럼 추진방향 보고 및 논의	
10	2016.03.31	-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지킴이 운영계획 -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추진현황 보고 - 서울시 인구감소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 방향 자문	실무위원회
11	2016.05.19	-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 확산 방안 - 민선6기 2주년 일자리·노동 분야 성과 토론회 개최 방안 -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 자문 - 6월 청년일자리 포럼 및 5월 행사계획 등	실무위원회
12	2016.06.20	- 서울시 청년일자리 포럼 개최	실무위원회
13	2016.06.30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추진방안 보고 - 서울시 일자리노동포럼 운영 계획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표 용역 결과보고	
14	2016.07.15	- 일자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일자리·노동 토론회 개최 계획 -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안)	실무위원회
15	2016.09.30	- 글로벌 민간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16	2017.03.08	- 2017년 일자리종합계획 추진 등 자문	실무위원회
17	2017.06.21	- 서울시 청년 해외일자리 정책 연구	실무위원회
18	2017.08.23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거버넌스 운영 방안 논의	
19	2017.12.15	- 여성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 '18년 주요 일자리 예산 사업	
20	2018.3.29	- 2차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보고 - 2018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 분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1	2018.4.27	- 2018년 강소기업 지원 계획보고 - 2차회의논의 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2	2018.5.17	- 2018 청년일자리 관련사업 추진 현황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제안, 향후 논의과제 건의	실무위원회
23	2018.6.8	-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보고 - 향후 분과회의과제 논의	실무위원회
24	2018.11.7	- 2019년 일자리 주요사업 - 2018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추진현황 - 서울지역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	

# 제3기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임기 만료('19.8.11.)에 따라 제3기 위원회 구성을 통한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에 기여

## I. 추진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2015.10.8. 제정)」 제9조 등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 □ 추진경과

- 2015.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시장공약)**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추진('15.6월)
- 2015. 8월      **제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0명, 2015.8.12.~2017.8.11.
- 2017. 8월      **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31명)**
  - 위원/임기 : 31명, 2017.8.12.~2019.8.11.

### □ 운영실적 및 성과(제2기)

**운영실적**

: 7회 운영(본회의 4회, 실무회의 3회)

- **본 회의** : 위원 위촉, 일자리 종합계획 및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 등 논의
- **실무회의** : 분야별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문(분과별 1회, 총3회)
  - 강소기업 지원계획,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논의



## 운영성과

- **市 일자리정책의 기반 마련 및 통합성 강화**
  -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틀·윤곽 제시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등 통합 논의
  - 일자리정책 추진관련 대상별(청년, 어르신, 여성 등), 분야별(창업, 산업, 도시재생 등) 분류 및 논의 및 일자리 연관된 민간지원 정책 종합논의
- **서울시 기술교육원 등 일자리 관련 산하기관 협업 강화 추진**
  - 서울시 기술교육원 프로그램들과 여성인력개발기관 간 협업 방안 검토
  - 비 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화 추진
- **관 주도의 일자리정책 수립에서 탈피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협치의 정책수립 시스템 마련**
  - 민간 일자리 영역의 전문가, 자원, 기관 등의 적극 참여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확대 추진

## II. 운영의 필요성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일자리대책 추진**
  - 청년실업의 사회적 문제, 글로벌 경기침체,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 등 고용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능동적 대응 필요
- 市 일자리 정책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일자리정책이 실·본부·국 별, 정책대상별, 수단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연계 가능한 총괄기능 필요
- 일자리정책 쏠 과정에 시민 및 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참여·협력 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지속 필요**
  - 일자리 수요자인 시민, 기업 및 관련 전문가 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상시화 및 체계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지속 운영

### Ⅲ.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① 위원구성 다변화로 일자리위원회 대표성 강화 및 민·관 협력추진

② 서울시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위원구성 다변화 및 민간 전문가를 통한 일자리 민·관 협력 체계 강화

- 민간, 노동, 여성, 청년 등 위원 구성 다변화를 통한 위원회 대표성 강화
  - 민간(이노비즈, 한국MICE협회 등), 노동계(한국·민주노총 등), 여성(여성능력개발원 등), 청년유니온 등 관련전문가 위촉

○ 일자리 관련 현장소통기능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 추진

-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수요가 있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소통기회 확대

○ 現 일자리위원으로 재구성(본인의사 반영)을 통한 위원회의 연속성 유지하되, 분야별 균형 고려

- 노사단체대표, 민간대표, 일자리·노동전문가, 당연직(서울시 등) 비율 고려

□ 일자리 정책 개발·평가, 모니터링 등 기능 활성화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일자리 분야별 현안에 따라 일자리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등 운영을 통한 일자리정책 개발, 모니터링, 개선방안 등 마련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발굴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조직정비 및 민간 전문가 확대 추진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2기 실무위원회 : 기업일자리분과, 청년일자리분과, 사회적경제일자리분과

○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강화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및 피드백 활성화

## IV. 세부 추진계획

###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인원** : 32명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원장(서울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 8명, 위촉직 24명
    - 당 연 직 : 서울시 및 지방고용노동청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서울시장, 경제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재생실장, 노동민생정책관, 노동협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위 촉 직 : 일자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 노사단체대표 8명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
      - 민간각계대표 8명 : 청년유니온(청년), 대한노인회(어르신) 등 민간각계 대표
      - 일자리노동전문가 8명 : 한국고용정보원(노동), 서울연구원(학계), 변호사(법률), 서울시의회 의원 등 일자리노동전문가
- ※ 여성위원 비율 : 시의원 포함 위촉직 24명 중 9명(37.5%)

**위원회 임기** : 2년('19.8.12.~'21.8.11., 2회 한하여 연임가능)

**위원회 조직** : 본 회의 및 실무회의

- 본 위원회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수행
  - 위 원 : 기업, 경제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일자리정책 비전·정책방향 설정, 민관협력 등 추진
- 실무위원회
  - 위 원 :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운영
  - 역 할 : 일자리정책개발, 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기능 등 수행

## 주요기능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 수행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일자리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 위원회 운영

### 본회의/실무회의

- 본 회의 : 정기회의(2회)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일자리정책의 비전 및 방향 등 제시
- 실무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시 개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V. 향후 추진일정

- 제3기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 : '19.9월
- 제3기 일자리위원회 회의개최 : '19.9월
  - 제3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안 논의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등